## 아름다운 이 수 행복한 시 인

# 제2021-196호 2021년 10월 20일(수)

人



보

## 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45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1-451호
 소하천 점용허가(변경) 고시(제2021-451호)
 4

### 공 고

ㅇ 여수시	공고	제2021-276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21수용1184)	6
ㅇ 여수시	공고	제2021-2793호	2021년도 착한가격업소 추가 확대 지정 운영 계획 알림	34
ㅇ 여수시	공고	제2021-2795호	도로지정 공고(용주리 1429-4, 1429-17번지)	39
ㅇ 여수시	공고	제2021-2806호	공시송달 공고(용수 소하천 정비공사)	40

## 기 타

○ 여수시 훈령 제381호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43

회				
람				

### 여수시 고시 제2021 - 450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ㆍ사용 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공사내용
(허가(승인)일)	주 소	성 명			교부일자	
2021-12 ('21. 5. 6.)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106-5번지 일원	1,246.73 m²	'21. 10. 20.	소라면 사곡2리 진목마을 선착장 정비공사 (선착장 확장)

2021. 10. 20.

여 수 시 장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1-45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1년 10월 20일

### 여 수 시 장

시행자 (점용 • 사용자)	상호 및 명칭	다음 허가니	내역 참조
	대표자 (성 명)	주소	
소	하천명		
	위치		
공사 (점용 • 사용)	면적	폐천부지(原 예상 '	
(점용·사용) 개요	기간		
	목적 및 사유		

#### 열람서류

- 1. 실시설계도서
-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지	ŀ		점	용내용		비고
	에기진오	역원경	주소	성명	위치	면적(m²)	점용목적	점용기간	
1	2021-19	웅천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하나**신탁	여수시 웅천동 1865-3번지	66	보행용 교량 설치	2021. 6.25. ~ 2025.12.31.	
2	2021-20	중방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도로시설관리과	여수시 화치동 1299번지	201.6	법면 정비를 위한 가도 개설	2021.10.12. ~ 2021.11.13.	
2	2021 5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소호동 647-3번지	146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진출입로	2021.3. 26. ~ 2025.12.31.	당초	
3	2021-5 소제천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덕양로 ***		엠*이기업㈜	여수시 소호동 647-3번지	127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진출입로	2021.3. 26. ~ 2025.12.31.	변경	

#### 여수시 공고 제2021-2763호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21수용 1184)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0.

# 여 수 시 장

□ 사 업 명 :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열람기간 : 2021.10.20. ~ 2021.11.4.(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여수시 시청로 1), ☎ 061-659-4586
□ 의견제출기간 : 2021.10.20. ~ 2021.11.4.(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해당없음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여수시 소호동 556번지 주택 등 487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명세

#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지장물건)

일련 번호	소자	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	랴	소유자		이해관계(	인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종류	규격 규격	구소 성명 주.		주소	성명	고		
계											
1	여수시 소호동	556-2	주택	조적조 강판지붕(5.7*12.5)	71.25	m²	여수시 소호10길 42-1(소호동)	김목곤			
			다용도실	조립식판넬지붕(5*1.8)	9	m²					
			다용도실	조적조 판넬지붕(12.5*1.7)	21.25	m²					
			창고	조적조 판넬지붕(11.8*(1.5+4.2)/2)	33.63	m²					
			창고	조적조 판넬지붕(1.8*7.5)	13.5	m²					
			창고 및 화장실	조적조 강판지붕	24	m²					
			담장(화단)	시멘트블록(10.8*1.6)	17.28	m²					
			담장(입구)	시멘트블록(3.8*2.1)	7.9	m²					
			대문		1	식					
			입구	시멘트(7.0*2.3)	16.1	m²					
			마당	시멘트(12.9*2.7)	34.8	m²					
			동산이전비		1	식					
			화단		3	식					

종려나무	2	주			
사철나무	3	주			
산수유	1	주			
오가피	5	주			
감나무	5	주			
동백나무	4	주			
철쭉	5	주			
유자나무	20	주			
천년수	1	주			
자두나무	6	주			
대추나무	2	주			
골담초	7	주			
목단	5	주			
비파나무	6	주			
도장나무	2	주			
분무기	4	식			
경운기	1	식			
관리기	 1	식			
정미기	1	식			

		예취기		3	식		
		이양기		1	식		
		경운기로터리		1	식		
		전동분무기		2	식		
		양수기		8	식		
		건조기		1	식		
		고압호스		2	식		
		수중모터		2	식		
		파종기		1	식		
		저울		1	식		
		고추분쇄기		1	식		
		비료살포기		1	식		
		닭털제거기		1	식		
		스프링쿨러		10	식		
		절단기		1	식		
		여물절단기		1	식		
		농약살포기		1	식		
		경운기쇠발통		1	식		
여수시 소호동	531-1	하우스	철재 비닐(50*10)	500	m²		

하우스	철재 비닐(7.6*20)	152	m²			
하우스	철재 비닐 및 차광막(4*4)	16	m²			
하우스	철재 비닐 및 보온덮개(6*6)	36	m²			
진입로포장		127.5	m²			
매실나무		17	주			
석류나무		7	주			
포도나무		7	주			
오디나무		4	주			
은행나무		1	주			
비파나무		1	주			
두릅나무		9	주			
옻나무		8	주			
블루베리		3	주			
딸기		16.5	m²			
무화과		3	주			
무화과묘목		50	주			
동산이전비		1	식			
플라스틱 박스		15	개			
아시바파이프		35	개			

밧데리	2	개			
고무통	3	개			
물탱크	1	개			
전기릴선	2	개			
진열대	2	개			
오이지지대	600	개			
고추지지대	500	개			
호스	8	개			
하우스 파이프	30	개			
하우스클램프	300	개			
하우스 개폐기	2	개			
강선조리개	500	개			
모판	600	개			
저울	2	개			
양수기	1	개			
전기모터	1	개			
일반모터	1	개			
사다리	1	개			
화목난로	1	개			

			보온덮개		10	개					
			냉장고		2	개					
2	여수시 소호동	463-1	주택	조적조 슬라브지붕	55	m²	여수시 소호9길 34-3(소호동)	김석환	여수시학동1길 19	여천 농업 영 조합	근저당
			차양	철재 스레트(10*2.1)	21	m²					
			마당1	시멘트(17.5*4)	70	m²					
			마당2	시멘트(5.4*6.4)	34.5	m²					
			대문		1	식					
			계단		1	식					
			계단난간		1	식					
			물탱크		1	식					
			보일러실	조적 강판(1.2*2)	1	식					
			빨래건조대		1	식					
			담장(앞)	시멘트블록(20*0.6)	12	m²					
			담장(옆)	시멘트블록(8.3*2)	16.6	m²					
			감나무		2	주					
			대밭		82.6	m²					
3	여수시 소호동	547-2	주택1	조적조 스레트지붕(15*5)	75	m²	여수시 소호9길 28(소호동)	김성곤			
			세면장	조적조 스레트지붕(3.5*2.3)	8.05	m²					
			보일러실	조적조 강판지붕(2*1.2)	2.4	m²					

창고 및 화장실	조적조 강판지붕(2.9*6)	17.4	m²			
차양1	철재 강판(12*1.8)	21.6	m²			
차양2	강판(1.4*5.6)	7.84	m²			
장독대		1	식			
대문		1	식			
마당	시멘트(15.2*1.3)	19.7	m²			
입구	시멘트(4.5*1.3)	5.8	m²			
화단		1	식			
앵두나무		1	주			
유자나무		1	주			
후박나무		7	주			
무화과		2	주			
동백나무		15	주			
감나무		3	주			
느릅나무		8	주			
종려나무		10	주			
편백		2	주			
사철나무		3	주			
느릅나무		6	주			

			후박나무		1	주				
			대나무		140	m²				
			분무기		1	식				
			예취기		1	식				
4	여수시 소호동	457-6	주택1	목조 강판지붕(13*3.9+6.2*1+2.5* 5.6)	70.9	m²	여수시 소호9길 43(소호동)	김유곤		
			주택2	조적조 스레트지붕(3.6*6.2)	22.32	m²				
			창고	블록조슬라브지붕(2.5*1+1.9 *3.7)	9.53	m²				
			차양	2.2*14.7	32.34	m²				
			챠양	목재 스레트(1.2*6)	7.2	m²				
			마당	시멘트(15*4)	60	m²				
			대문		1	식				
			담장	시멘트블록(15*0.8)	12	m²				
			계단		1	식				
			우물		1	식				
			화덕		1	식				
			빨래터		1	식				
			화단		1	식				
			배나무		1	주				
			관리기		1	식				

			예취기		3	식				
5	여수시 소호동	560-5	주택	조적스레트 및 조적판넬(6.5*5.5+5.5*3)	52.25	m²	여수시 소호10길 29-5(소호동)	김종심		
			욕실	조적조 스레트지붕(2.4*1.3)	3.12	m²				
			축사 및 창고	블록조슬레이트 단층지붕	25.23	m²				
			컨테이너		1	식				
			저온저장고		1	식				
			보일러실		1.3	m²				
			대문		2	식				
			마당	시멘트(4.2*1.9)	7.98	m²				
			철제울타리		27.6	m				
			바닥포장	시멘트(5.4*14.5)	78.3	m²				
			담장	블록(4*1.6)	6.4	m²				
			바닥포장	시멘트(11.1*11.1)	123.21	m²				
			화목보일러		1	식				
			판넬차양 (저장고앞)	철재 판넬(3*2)	1	식				
			동산이전비		1	식				
			은행나무		5	주				
			감나무		4	주				
			복숭아		4	주				

			옻나무		2	주				
			대추나무		1	주				
			사과나무		2	주				
			자두나무		2	주				
			홍가시		1	주				
			꾸지뽕		1	주				
			황칠나무		1	주				
			보리수		2	주				
			동백나무		1	주				
			모과나무		1	주				
			사철나무		4	주				
			향나무		1	주				
			철쭉		3	주				
			오미자		5	주				
			느릅나무		1	주				
			하수오		6.6	m²				
			방풍		6.6	m²				
6	여수시 소호동	556-2	주택	조적조강판지붕 (5.6*12.8-5*1.1))	66.18	m²	여수시 소호10길 46(소호동)	김현곤		
			욕실	조적조 강판지붕(4.4*1.8)	7.92	m²				

			다용도실	조적조강판지붕 (14.8*1.8-2.8*1.2)	23.28	m²				
			창고	조적조 강판지붕(7.4*2)	14.8	m²				
			보일러실	조적조 강판지붕(4.5*1.8)	8.1	m²				
			축사	조적조 강판지붕	2	m²				
			담장	시멘트블록(13.2*0.5)	6.6	m²				
			바닥포장	시멘트(6.4*4.5)	28.8	m²				
			앞마당	시멘트(17.4*4.8)	83.5	m²				
			옆마당	시멘트(3*10.4)	31.2	m²				
			대문		1	식				
			장독대		1	식				
			우물		1	식				
			화덕		1	식				
			화단		1	식				
			감나무		4	주				
			오가피		1	주				
7	여수시 소호동	616	주택1	목조슬레이트지붕(10.7*4.6+ 2.6*2.1+1*7.4)	62.08	m²	여수시 소호10길68(소호동)	민순기		
			주택2	목조슬레이트지붕(8.3*4.3)	35.69	m²				
			다용도실	조적 스레트(8.4*1.5)	12.6	m²				
			창고 및 화장실	조적조 스레트지붕((3.6+2.8)*4.2/2)	13.44	m²				

화장실	조적조 슬라브지붕(2.9*1.8)	5.22	m²			
축사	블록조슬레이트 단층지붕	5.3	m²			
창고2	조적 스레트((2+3)*5.6/2)	14	m²			
차양	스레트(2.3*12.3)	28.29	m²			
바닥포장	시멘트(6*1.8)	10.8	m²			
마당	시멘트(9.3*6.2)	57.6	m²			
문주		1	식			
장독대		1	식			
계단		1	식			
지하수	모토포함	1	식			
화단		2	식			
감나무		6	주			
자두나무		1	주			
대추나무		2	주			
무화과		1	주			
사과나무		1	주			
해당화		1	주			
헛개나무		1	주			
대밭		82.6	m²			

			머위밭		49.5	m²				
			분무기		3	식				
			예취기		1	식				
8	여수시 소호동	560-4	주택	조적조 슬라브 및 강판지붕(15.7*7.3+1.3*2.8)	118.25	m²	여수시 소호10길 29-5(소호동)	이은석		
			다용도실	조립식 판넬지붕(13*2.4)	31.2	m²				
			보일러실	조적 스레트	18.8	m²				
			축사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7	m²				
			대문		1	식				
			장독대		1	식				
			우물		1	식				
			옥상계단		1	식				
			태양열판넬		1	식				
			태양열파이프		1	식				
			차양(대문쪽)	조립식파넬(6.3*3.3)	20.79	m²				
			차양(옥상쪽)	철재스레트(7.5*2)	15	m²				
			차양(옆건물)	철재 스레트(7.2*2)	14.4	m²				
			화덕		2	식				
			담장	블록(15*1.2)	18	m²				
			빨래건조대		1	식				

마당	시멘트(18.7*3.8)	71.06	m²			
심야전기보일러		1	식			
울타리		1	식			
동산이전비		1	식			
화단		4	식			
대추나무		2	주			
감나무		7	주			
금목서		1	주			
무화과		1	주			
포도나무		5	주			
동백나무		1	주			
철쭉		7	주			
치자나무		2	주			
수국		5	주			
비자나무		2	주			
엄나무		1	주			
오가피나무		9	주			
매실나무		1	주			
살구나무		1	주			

			자두나무		2	주					
			모과나무		1	주					
			옻나무		1	주					
			유자나무		1	주					
			아로니아		4	주					
			느릅나무		1	주					
			뽕나무		1	주					
			장미		1	주					
			분무기		3	식					
			경운기		2	식					
			관리기		1	식					
			농산물건조기		1	식					
			예취기		1	식					
			전기분무기		1	식					
9	여수시 소호동	464	주택	목조 강판 지붕(12*3.6)	43.2	m²	여수시 소호9길 36(소호동)	이형호	여수시 흥국로 29(학동)	신기 신용 협동 조합	근저당
			창고 및 화장실	블록조 슬레이트지붕(3.5*10)	35	m²					
			창고 1	블록조 슬레이트단층지붕	18.5	m²					
			창고2	조립식 판넬지붕(2.8*4)	11.2	m²					
			창고3	블록조	3.52	m²					

	슬레이트지붕(2.2*1.6)					
대문		1	식			
장독대		1	식			
마당	시멘트(6.9*5.5)	37.95	m²			
담장	블록(6.6*1.5)	9.9	m²			
차양(주택)	2.3*11	25.3	m²			
차양(창고 및 화장실)	1.5*10	14.7	m²			
차양	목재 강판(4.4*1.2)	5.28	m²			
화단		2	식			
감나무		5	주			
동백		1	주			
치자		2	주			
목련		1	주			
아왜나무		1	주			
장미		1	군			
매실		1	주			
유자		1	주			
자두		2	주			
분무기		1	식			
예취기		1	식			
	- ;	22 -				

10	여수시 소호동	535-15	주택	블록조슬레이트지붕 (8*5.3)	42.4	m²	여수시소호5길22,2동 805호 (소호동,금호아파트)	정금자		
			차양	스레트(1*8)	1	식				
			화장실	블록조슬레이트단층지붕	3.6	m²				
			담장	시멘트블록(11.6*1)	11.6	m²				
			문주		1	식				
			화단		1	식				
			돌담	6.1*1	6.1	m²				
			마당	시멘트(10.6*2.1)	22.26	m²				
			감나무		1	주				
			대밭		49.5	m²				
11	여수시 소호동	555-1	차양	철재스레트(12.5*1.8)	22.5	m²	여수시 소호10길 50-4(소호동)	이동환	정학 민	
			차양	철재 스레트(12.5*1.5+5.3*1)	24.05	m²				
			욕실	조적조 (2.5*2)	5	m²				
			견사	조적조(3*2)	1	식				
			계사	조적 스레트(2.5*1.5)	1	식				
			우물		1	식				
			동산이전비		1	식				
			닭		6	마리				
			화단		1	식				

		감나무	1	주			
		오가피	5	주			
		후박나무	1	주			
		유자나무	1	주			
		동백나무	3	주			
		아왜나무	3	주			
		골담초	2	군			
		드릅나무	15	주			
		목단	1	주			
		사철	10	주			
		매화	1	주			
		복숭아	1	주			
		능소화	1	주			
		분무기	2	식			
		경운기	1	식			
여수시 소호동	555	감나무	3	주			
		동백나무	8	주			
		엄나무	2	주			
		포도나무	2	주			

			배나무		1	주					
			무화과		1	주					
			감나무		3	주					
			골담초		1	군					
			아로니아		70	주					
			오가피		3	주					
			매실		4	주					
			석류		1	주					
			사철		1	군					
			사철		1	주					
			뽕나무		4	주					
			무궁화		1	주					
12	여수시 소호동	906 외 7	공장(가)	조적조 스레트지붕(50*12+50*12)	1,200.0	m²	여수시좌수영로277 e마트문화센터1층(오 림동)	금해수 산㈜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여수지점)	중소 기업 은행	그저당
			창고등(◌)	조적조 스레트지붕(38*12)	456.00	m²					
			작업장 및 통로(ㅎ)	철골조 스레트지붕(38*5)	190.00	m²					
			공장등(ㅌ)	조적조 스레트지붕(42.7*9.5)	405.65	m²					
			창고	조립식판넬(2.5*3)	7.50	m²					
			작업장 등(ㅍ)	철골조 스레트지붕((5.4+6.2)*21/2+ 6.2*8.5+(1.4+6.2)/2*12.5)	222.00	m²					
			방	조립식 판넬(3.7*2.5)	9.25	m²					

창고	조립식 판넬(3*3)	9.00	m²			
화장실	조립식 판넬(2.3*1.7)	3.91	m²			
보일러실(마)	조적조 스래브지붕(10.2*7.3)	74.46	m²			
작업장(ㄱ)	조적조 스레트지붕(9*39.8+3.7*10.2)	395.94	m²			
창고(작업장내)	목조 (3*4)	12.00	m²			
철구조물		1.00	식			
이동식화장실		1.00	식			
훈연실	조적조 스래브지붕(6.2*1)	6.20	m²			
화단		1.00	식			
소나무		1.00	주			
오동나무		1.00	주			
동백		1.00	주			
감나무		2.00	주			
후박나무		2.00	주			
뽕나무		1.00	주			
느티나무		2.00	주			
공장 및 냉장실(바)	조적조 스레트 및 일부 슬래브지붕(38*13)	494.00	m²			
공장입구	조적조 스래브지붕(3.2*2)	6.40	m²			
작업장(ㄷ)	철골조 스레이트지붕(12*5+(12+16) /2*15+(5+6)*13.5/2)	344.25	m²			

공장(사)	조적조 슬래브지붕(34*14.2)	482.80	m²			
지하	조적조 (4.5*5.5)	24.75	m²			
공장(ㅊ)	조적조 스레트지붕(18*10)	180.00	m²			
창고 및 공장(ㄹ)	조적조 스레트지붕((16.2+8.5)/2*23)	284.05	m²			
공장(아)	조적조 슬래브지붕(30*15)	450.00	m²			
캔준비실	철재	1.00	식			
지하	조적조 (4.5*5.5)	24.75	m²			
통로등	철재 스레트(6.5*11)	71.50	m²			
준비실	철재 스레트(4.5*6.5)	29.25	m²			
컨테이너 작업대	콘크리트(4*3.5)	1.00	식			
화단	자연석	1.00	식			
향나무		2.00	주			
유카		2.00	군			
향나무		6.00	주			
유카		3.00	군			
종려		4.00	주			
자귀		7.00	주			
전봇대		1.00	주			
헛개나무		2.00	주			

후박나무		2.00	주			
헛개나무		1.00	주			
사철		4.00	주			
향나무		2.00	주			
호랑가시나무		2.00	주			
보리수		1.00	주			
철쭉		5.00	군			
종려		5.00	주			
뽕나무		1.00	주			
후박나무		2.00	주			
목서		1.00	주			
목련		1.00	주			
동백나무		1.00	주			
느릅나무		1.00	주			
숙소(다)	조적조 슬래브지붕(19.6*8.6+2.1*1)	170.66	m²			
부엌등(ㅅ)	조적조 스레트지붕(16.5*3.9)	64.35	m²			
사무실 및 숙소(ㅋ)	조립식 판넬지붕(14.4*8.6)	123.84	m²			
바닥	콘크리트 타일등(5*2+1*2)	1.00	식			
계단	콘크리트	1.00	식			

차양	철재스레트(1.7*4.1)	1.00	식			
보일러실	조적조 슬래브지붕(1.9*1.5)	1.00	식			
화장실(ㅁ)	조적조 슬래브지붕(2.5*6)	15.00	m²			
샤워장(ㅂ)	조적조 함석지붕(3.5*6)	21.00	m²			
계단	철재	1.00	식			
관정	소형	2.00	식			
담장등	조적 및 콘크리트	1.00	식			
화단		2.00	식			
석류		2.00	주			
유카		7.00	군			
종려		7.00	주			
향나무		4.00	주			
단풍		1.00	주			
사철		7.00	주			
개나리		7.00	m			
광나무		7.00	주			
돈나무		1.00	주			
향나무		4.00	주			
목서		1.00	주			

냉장실(자)	조적조 스레트지붕(16*30.5)	488.00	m²			
준비실 및 보일러실(ㄴ)	조적조 슬라브지붕(20.5*5.5)	112.75	m²			
필로티	조적조 슬래브(5.5*3)	16.50	m²			
철구조물		1.00	식			
컨테이너	3*6	1.00	식			
휀스	철재(20*1.6)	32.00	m²			
상가건물(나)	조적조 슬래브지붕(20.3*11.5)	233.45	m²			
입구	조적조 슬라브(3.1*1.9)	5.89	m²			
데크	목재(6.2*2.6)	16.12	m²			
가스보호시설	조적조	1.00	식			
주방	철재 판넬 및 조적보강(7.5*4.8)	36.00	m²			
창고	철재 판넬 및 조적보강(4.1*2.6)	10.66	m²			
창고	조립식 판넬지붕(2.5*6)	15.00	m²			
빨래건조대		1.00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13*4+3*5)	67.00	m²			
철구조물(2층)	철재	1.00	식			
주방준비실(2층)	조립식 판넬지붕(2.5*5)	12.50	m²			
차양	넥산(1.4*5)	7.00	m²			
통로계단		1.00	식			

통로	슬래브(1.2*4.2)	1.00	식			
화단		1.00	식			
은행나무		2.00	주			
가이즈카향나무		3.00	주			
종려		4.00	주			
향나무		3.00	주			
목서		2.00	주			
화단		1.00	식			
옥향		2.00	주			
사무실(라)	조적조 슬래브지붕(20.3*8.6)	174.58	m²			
입구	조적조 슬래브 위 판넬(2.9*1.8)	5.22	m²			
화단		3.00	식			
자귀나무		1.00	주			
사철		1.00	주			
옥향		1.00	주			
쌀밥나무		1.00	주			
창고	조립식 판넬지붕(3.6*3.8)	13.68	m²			
철구조물	철재 및 담장보강(10m)	1.00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157.00	m²			

			화단		6.00	식				
			소나무		10.00	주				
			철쭉		42.00	m				
			종려		3.00	주				
			향나무		1.00	주				
			사철		1.00	주				
			복숭아		3.00	주				
			울타리	철재 그물망(70*1.5)	105.00	m²				
			바닥포장	콘크리트	4,086.0 0	m²				
			대문		2.00	식				
			담장1	조적조(23+25)*1	48.00	m²				
			담장2	철재 강판(30*2)	60.00	m²				
			담장3	조적조(7*2)	14.00	m²				
			담장4	조적조(26*2)	52.00	m²				
			담장5	조적조(60*1.8)	108.00	m²				
			담장6	조적조(35*2.5)	87.50	m²				
			영업보상	금해수산㈜	1.00	식				
13	여수시 소호동	917	영업보상	소호회관	1.00	식	여수시 소호로 317(소호동)	윤수미		

# 의 견 서

사 업 시 행 자 의 성명 또는 명칭	여수시장
사 업 의 종 류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용·사용대상 토지 및 물건	
의 견	
	2021 년 월 일
성 명 주 소	
※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서류	루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 2021년도 여수시 착한기격업소 추가 확대 지정 운영 계획 공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우리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지원하고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및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지정 및 취소) 규정에 따라 2021년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추가 확대 지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0.

# 여 수 시 장

# 1. 지정 개요

가. 신청기간 : '21. 10. 20.(수) ~ 11. 19.(금)

※ 기간 내 선착순 모집(13개소)

# 나. 신청대상

- 외식업(한식,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식)
-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카페, 기타 서비스업)

#### ※ 신청 제외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다.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서류 제출 후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 출 처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659-3605

# 2.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 가. 가격 기준(45점)

- 가격 수준(20점) : 지역 평균가격 대비 가격 수준
- 가격 안정 노력(15점)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10점)
  -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

### 나.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0점)

-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 다.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20점)

- 이용만족도 부문(10점)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
- 운영 및 시설 부문(각 5점) :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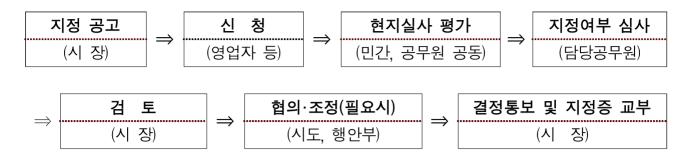
## 라. 공공성 기준(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 마. 가점 부여 기준(10점)

- 사회공헌 활동(8점)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
- 표창 사항(2점) : 최근 3년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 ※ 지정 기준에 따른 <u>종합 평점이 70점(가점 포함) 이상</u>이고, <u>가격기준 평점이</u>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얻은 업소 순으로 우선 선정

# 3. 지정 절차



### 가. 현지실사 평가

- 민·관 공동으로 현지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2)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소비자 단체 등 참여

#### 나.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현지실사 평가 후 심사를 통해 지정 결정 및 통보(지정증 및 표찰 교부)

### 다. 등록 및 홍보

-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해당업소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홍보

# 4. 착한가격업소 지원 계획

## 가. 재정적 지원

- 소모품, 가격안정 유지를 위한 기자재 등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물품 지원 \*코로나19 관련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서비스 개선용품 구입 지원 (1인 복합찬기, 코로나방역 물품, 개인별 집게, 집게통 등)

# 나. 홍보 및 이용활성화

- 시 홈페이지, 거북선 소식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활성화 도모

# [붙임 1]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여수시 칙	한기	ŀ격업소	지정	신청	서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일 반 현 황	대표자			생년월일		
할 번 번 청	업 종			연 락 처		
	주 소					
	품 목	가	- 격(원)	- 五	목	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1 ( )	, / H/	
	최근 1년간 가격	ᅾ인하	[품목 :		/ 부( 인하시기	
가 격 안 정 노 력	가 격 동 결		1년 이상(	) / 1년 미	만( ),	/ 6개월 미만( )
	최근 1년간 가격인상		[품목 :	• • • •	/ 부( 인상시>	
정부시책	옥외가격 표시	제	이행( ) / 미이행( ) / 해당없음( )			
이 행	원산지 표시	세	이행(	) / 미이형	]( )/	해당없음( )
기 타	사회공헌 활	동				
(가 점)	표창(최근 3년	크)		이상( ) / ( ) / 기타		) / 도지사( ) )
위와 같이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붙임 2]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총 점		100	
〈 위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평균가격 미만(10%이상)	20	
	7	가격수준	지역의 평균가격	평균가격 미만(5~10%)	15	
		(20점)	이하 여부	평균가격 이하(5%이하)	10	
				업소가격 > 평균가격	지정제외	
) 가격			가격인하	1년 내	15	
기준	가	격안정노력		1년 이상	13	
(45점)		(15점)	가격동결	1년 미만	11	
				6개월 미만	9	
	지러 <sup>.</sup>	a. 기거사프	업소 내 저렴한	30% 이상	10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점)	가격상품 비중	20%~30%	8		
		7 0 (= 0)	10%~20%		5	
	주	주방 등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5	
	영 (10점)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 소독 여부	5	
위생 청결 기준	업 시 설	매장 내 (10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10	
(30점)	화장실 (5점)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5	
	건남	물 등 환경 (5점)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청결 유지 정도	5	
	0]	용만족도		세 제작 취기는 미 미그는	상 10	
품질	'	(10점)	엽소 이용 우 이용전반 	에 대한 친절도 및 만족도	중 5	
서비스	\ \ \ \ \ \ \ \				하 -	
기준 (20점)		운영 (5점)	업소 종사자의 복장 및	위생상태, 냉 난방 가동 등	5	
		시설 (5점)	이용안내문, 표지판, 이	용편의시설 구비 여부	5	
공공성	0 VJ-	l과 교기에 미		모두 이행	5	
기준			! 원산지 표시제 등 책 이행 여부(5점)	일부만 이행	3	
(5점)		Λ ΓΕΥΠ Ε΄	1 10 1100	이행사항 없음	0	

## 〈가점 부여 [10점] >

분 야	배 점	평점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적약자 배려 등)	8점 범위 내에서 가점부여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표창	2점 범위 내에서 가점부여	

## [여수시 공고 제2021-2795호]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429-4, 1429-17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7	1)	14m	0.2m~5m	57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화양면	1429-4	현황도면	현황도면	19	"	
용주리	1429-17	참조	참조	38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0.

여 수 시 장

##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용수 소하천 정비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거소불명, 소유자의 사망, 부재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0. 20.

## 여 수 시 장 (인)

- 1. 사 업 명: 용수 소하천 정비공사
- 2. 위 치: 여수시 둔덕동 111-5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 4. 공고 기간: 2021. 10. 20.~2021. 11. 4. (16일간)
- 5. 공고 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6. 공고 내용
  - 협의 기간: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 협의 장소: 여수시청 건설과 (☎061-659-4039)
  - 보상 방법: 현금 보상
    - 위 협의 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절차: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 매도용 1통, 보상비 수령용 1통), 주민등록 초본 1부(전 주소 포함), 통장사본 1부
    - 지참물: 인감도장

###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건설과 (☎061-659-403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

## ○ 토지

	지번	TIP	ᄜᅑᄼᇔᄼ	소유자		шП
소재지	(편입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비고
여수시	153-3	답	760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	김*미	
둔덕동	(153-1)		700		<u> </u>	
여수시	170-4	답	518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	백*대	
둔덕동	(170)		310		7 -11	
여수시	153-4	도	13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	양*렬	
둔덕동	(153-2)	<u> </u>	13	[ [ ] [ ] [ ] [ ] [ ] [ ] [ ] [ ] [ ] [	0 2	
여수시	111-5	답	154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	이*안	
둔덕동	(111-2)		134		VI L	
여수시	111-6	답	6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	이*안	
둔덕동	(111-2)		0	근다음도 어무지 근 ㅋㅇ	Ol. F	
여수시	156-2				전**씨양도	
 둔덕동	(156)	답	11.4	전라남도 여수시 용수1길 **	공파둔덕종	
	(100)				중	
여수시	156-3	답	222.0	전라남도 여수시 용수1길 **	전**씨양도	
둔덕동	(156)		323.8	전다금도 어구시 중구1일 *** 	공파둔덕종 중	
여수시	304-1					
둔덕동	(304-1)	도	6.2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	황*성	
여수시	304-2				_	
둔덕동	(304)	답	38.5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	황*성	

## ○ 지장물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여수시 둔덕동	153-3	비닐하우 스	철파이프	35 m²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	김*미	
		휴게실	컨테이너	1식			
		창고	컨테이너	1식			
여수시	170-4	전기시설		1식	·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	백*대	
둔덕동	170-4	물통	FRP	1식	현대급포 서우시 구현포   	~ ~ 대	
		수로배관	PVC 150mm	30m			
		동산이전비		1식			
여수시 둔덕동	109-9	전기시설	계량기	1식	전라남도 여수시 용수1길 **	심*천	

## ○ 영농손실

소재지	_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エ제バ	(편입 지번)	Ţ		주소	성명	5
여수시	153-3	늅	760	전라남도 용수1길 **	곽*주	
둔덕동	(153-1)	1	700		∃"干	
여수시	170-4	답	518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	백*대	
둔덕동	(170)	1	516	현다음도 역구시 구선도 	~~~~	
여수시	111-5	납	154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	이*안	
둔덕동	(111-2)		154	전다람도 여구자 문극등 ···	이 전	
여수시	111-6	늅	6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	이*안	
둔덕동	(111-2)	1	0	- 현다금도 역구시 문극이	이~현	
여수시	156-2				전**씨양도	
 둔덕동	(156)	답	11.4	전라남도 여수시 용수1길 **	공파둔덕종 중	
여수시	156-3	답	323.8	전라남도 여수시 용수1길 **	전**씨양도 공파둔덕종	
둔덕동	(156)	0	525.0		중	
여수시	304-2		20.5		÷1	
둔덕동	(304)	ᇜ	38.5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	황*성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0월 20일

中个小砂型 2

여수시 훈령 제 381호

붙임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1부.

##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제1항 제2호 다의 국내대회(유도 회장기· "종별선수권")를 유도 회장기· "청풍기"로 한다.
- 제17조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로 한다.
- 제20조 제1항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하며 연가는 "연15일로 한다"를 "연15일로 한며, 재계약을 하는 경우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최대 25일 한도)을 부여한다."로 한다.
- 제21조 제5항 대회의 규모에 따라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도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를 "있다."로 한다.
- 제25조 제2항 단원들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사를 "둘 수 있으며 조리사는 매월1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를 "둘 수 있 다."로 한다.

제3항부터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합숙소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 ④ 합숙소 내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도자와 선수의 합숙소를 구분하며, 2인 1실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 ⑤ 합숙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 2. 합숙소의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3. 음주, 추태, 소란, 고성방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

- 4.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5. 합숙소 내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을 참해하는 행위
- 6. 사적 용무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행위
- ⑥ 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 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3. 본인이 퇴소 의사를 표시할 때
  - 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표 2부터 별지 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등급산정기준 및 연봉액 기준표(제10조, 제12조 관련)

## 1. 지도자

특급	A급	B급	
• 올림픽 3위 이내 입상경력 • 세계선수권 1위 입상경력	<ul> <li>세계선수권 2~3위 입상경력</li> <li>아시안게임 3위 이내 입상경력</li> <li>국제 및 전국대회 1위 지도실적 3회 이상 (최근 5년)</li> </ul>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지도실적 • 전국규모대회상위 지도실적	
6,000~7,000만원	5,000~6,000만원	4,000~5,000만원	

## 2. 선수

드 그		산정기준	연봉액 (천원)	비고
	1	올림픽 1위	70,000	
	2	올림픽 2·3위	65,000	
특급	3	아시안게임 1위 또는 세계선수권 1위 또는 취득점수 65점 이상	60,000	
	4	취득점수 56점 이상	53,000	
	1	아시안게임 2·3위 또는 세계선수권 2·3위 취득점수 52점 이상	48,000	
A급	2	전국체전 1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1위 또는 취득점수 46점 이상	46,000	
	3	취득점수 40점 이상	43,000	
	1	전국체전 2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2위 취득점수 36점 이상	41,000	
B급	2	전국체전 3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3위 또는 취득점수 32점 이상	39,000	
	3	취득점수 26점 이상	37,000	
	1	취득점수 22점 이상	35,000	
C급	2	취득점수 18점 이상	33,000	
	3	취득점수 13점 이상	31,000	
	1	취득점수 10점 이상	29,000	
D급	2	취득점수 6점 이상	26,000	
	3	취득점수 5점 이하	24,000	

<sup>※</sup> 위 기준과 별도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연봉액을조정할 수 있으며, 고졸 출신 신규 임용선수의 점수 산정은 취득점수의 2/3을 적용한다.

[별표 3]

### 점수산정 기준표(제12조 관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8위	9~16위	비고
올림픽		특급		25점	20점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대회	특급	25점	20점	15점	10점		국가대표선수 10점가산 (국가대표로
전국체전 기타국제 대회	20점	18점	15점	10점	8점	5점	선발되어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한함)
전국규모 대회	10점	8점	6점				

- ※ 1. 연간 입상실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 적용
  - 2. 단체전은 입상한 성적의 100분의 50만 반영
  - 3. 해당연도 기간은 전년 12월 1일부터 현년 11월 30일까지로 환산
  - 4. 전국체전, 기타국제대회 4위~8위와 9~16위는 마라톤, 경보, 롤러 등 개인종목 성적만 적용

### 근 로 계 약 서(제4조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여 수 시 청 (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하 "선수"이라 한다) [는, 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sup>1)</sup>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 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 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② 근무지(근무장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sup>1)</sup>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 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 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 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 다. (확인: 선수 서명)
  -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 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선수 서명)
-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② 근로자의 날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비위 행위
-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 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 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연봉 원(₩ )으로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하고, 수당은 여수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20일에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한하여 지급한다.
  -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 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장운동 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 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 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 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 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 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사용자)					
주소	여수시 시청로 1				
회사명	여 수 시 청				
대표자	여 수 시 장 (인)				

선수(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 명	(인)		

###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입소신청서

종목	직위	
성명	성별	
계약일	입소희망일	

위 본인은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였고, 합숙소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며 입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퇴소신청서

종목	직위	
성명	성별	
퇴소희망일	퇴소사유	

위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위와 같이 자진퇴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신 · 구 조문대비표

### 혂 개 아 햀 정 제15조(메달수당)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메달수당) ① (생략)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대회 2. 국내대회 가. 전국체육대회 가. 전국체육대회 나. 육상 - 종별선수권·KBS배 나. 육상 - 종별선수권·KBS배 다. 유도 - 회장기 · <u>청풍기</u> 다. 유도 - 회장기 · 종별선수권 라. 요트 - 대통령기 · 해군참모총 라. 요트 - 대통령기 · 해군참모총 장배 장배 마. 롤러스케이트 - 종별선수권, 마. 롤러스케이트 - 종별선수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17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제17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로자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법 을 준용한다.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0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제20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 며 연가는 연15일로 한다. 며 연가는 연15일로 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 가(최대 25일 한도)를 부여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21조(훈련 등) ① (생략) 제21조(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내 · 외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④ (생략)

⑤ 국내 · 외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대회의 규모에 따라 별 수 있다. 단 대회의 규모에 따라 별 도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 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도자에 게 일괄 지급한다.

⑥ (생략)

제25조(합숙소 운영)

- ① 선수의 기량향상과 합숙훈련 및 숙 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 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단원들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사를 둘 수 있으며 조리 사는 매월1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금을 지급하다.

③ 〈신 설〉

<u>④ 〈신</u> 설〉

⑤ 〈신 설〉

도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합숙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원들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사를 둘 수 있다.

- ③ 합숙소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 수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 ④ 합숙소 내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 생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도 자와 선수의 합숙소를 구분하며, 2 인 1실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 ⑤ 합숙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 2. 합숙소의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3. 음주, 추태, 소란, 고성방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

4.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5. 합숙소 내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시적 용무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행위
	⑥ 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u>⑥〈신 설〉</u>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
	<u>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u>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자격을
	<u>상실하였을 때</u>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인이 퇴소 의사를 표시할 때
	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j	H	정	안
[별표 1]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 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현행과	같음)		
1. 임용자격					
구분 자 격 요 건	비고				
지도자 ○ 선수경력 6년 이상인 자 (감독 ○ 지도자 경력 <u>3년</u> 이상인 자 및 ○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코치) 이상인 자 ○ 선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선 수 ○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					
2. 임용 구비서류 1) 입단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명함판 사진2매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경기실적 증명서 1부(중앙경기단체 발형 6)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이적동의서) 7) 건강진단서 1부(종합병원) 8)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9)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및 경기지도실 증명서 (지도자에 한함)					
<ul> <li>3. 임용 방법: 서류심사 후 시장이 임용</li> <li>1) 공개모집</li> <li>2) 체육인 및 체육단체 추천</li> </ul>					

#### 혂 햀

#### 개 아 정

[별표 2]

등급산정기준 및 연봉액 기준표(제10조, 제12조 관련) 등급산정기준 및 연봉액 기준표(제10조, 제12조 관련)

### 1. 지도자

특급	A급	B급
<ul> <li>올림픽 3위 이내 입상경력</li> <li>세계선수권 1위 입상경력</li> </ul>	<ul> <li>세계선수권 2~3위 입상경력</li> <li>아시안게임 3위 이내 입상경력</li> <li>국제 및 전국대회 1위 지도실적 3회 이상 (최근 5년)</li> </ul>	<ul> <li>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지도실적</li> <li>전국규모대회 상위 지도실적</li> </ul>
6,000 ~7,000만원	5,000 ~6,000만원	4,000 ~5,000만원

[별표 2]

1. 지도자

(현행과 같음)

### 2. 선수

등	<u>1</u>	산정기준	연봉액 (천원)	비고
	1	올림픽 1위	70,000	
	2	올림픽 2·3위	65,000	
특급	3	아시안게임 1위 또는 세계선수권 1위 또는 취득점수 65점 이상	60,000	
	4	취득점수 <u>55점</u> 이상	52,000	
A급	1	아시안게임 2·3위 또는 세계선수권 2·3위	47,000	
	2	전국체전 1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1위 또는 취득점수 46점 이상	45,000	
	3	취득점수 <u>36점</u> 이상	42,000	
	1	전국체전 2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2위	40,000	
B급	2	전국체전 3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3위 또는 취득점수 32점 이상	38,000	
	3	취득점수 26점 이상	35,000	
	1	취득점수 22점 이상	33,000	
C급	2	취득점수 18점 이상	30,000	
	3	취득점수 13점 이상	28,000	
	1	취득점수 10점 이상	26,000	
D급	2	취득점수 6점 이상	23,000	
	3	취득점수 5점 이하	21,000	

<sup>2.</sup> 선수

등	<u> </u>	산정기준	연봉액 (천원)	비고
	1	올림픽 1위	70,000	
	2	올림픽 2·3위	65,000	
특급	3	아시안게임 1위 또는 세계선수권 1위 또는 취득점수 65점 이상	60,000	
	4	취득점수 <u>56점</u> 이상	53,000	
	1	아시안게임 2·3위 또는 세계선수권 2·3위 취득점수 <u>52점</u> 이상	48,000	
A급	2	전국체전 1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1위 또는 취득점수 46점 이상	46,000	
	3	취득점수 <u>40점</u> 이상	43,000	
	1	전국체전 2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2위 취득점수_36점_이상	41,000	
B급	2	전국체전 3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3위 또는 취득점수 32점 이상	39,000	
	3	취득점수 26점 이상	37,000	
	1	취득점수 22점 이상	35,000	
C급	2	취득점수 18점 이상	33,000	
	3	취득점수 13점 이상	31,000	
	1	취득점수 10점 이상	29,000	
D급	2	취득점수 6점 이상	26,000	
	3	취득점수 5점 이하	24,000	

조정할 수 있으며, 고졸 출신 신규 임용선수의 점수 산정은 취득점수의 2/3를 적용한다.

※ 위 기준과 별도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 위 기준과 별도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고졸 출신 신규 임용선수의 점수 산정은 취득점수의 2/3를 적용한다.

	현 행											개	7	정	안		
[별표 3]									[별3	王 3]							
7	점수산정 기준표(제12조 관련)										점수	산정	기준	표(제	12조	관련)	
구 분	1위 2	2위	3위	4위	5~8위	Ъ	고	7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89	9-16위	비고
올림픽	Ĩ	투급		25점	20점	국가디	भस		올	림픽		특급		25점	20점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대회	특급 2	25점 2	20점	15점	10점	선수1 가산	0점		세계	안게임 선수권 I회	특급	25점	20점	15점	10점		선수10점 가산 (국가대표로
전국체전 기타국제 대회	20점 1	.8점 :	15점	10점	5점	대회· 출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한함)		기	;체전 타국제 II회	20점	18점	15점	10점	8점	5점	선발되어 대 회 에 출 전 한
전국규모 대회	10점 8	8점	6점			선수 <sup> </sup> 			전 <sup>3</sup>	유 유 유	10점	8점	6점				선수에한함)
환산하	※ 연간 입상실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 적용								2. ラ 3. す 3. す 4. そ	국제대 성적의 배당연 (0일 <i>기</i> 선국체	1/2 도 기 사지로 전, 기	)개국 적용 간은 환산 타국제	이상전년	12월 4위~8	l 1일 위와	부터 9~16	은 입상한 현년 11월   는 마라톤,
[별표 4]									[별3	王 4]							
훈	:련비 :	지급기	기준3	፟ (제2			: 천유	1)	(현	행과 🤅	같음)						
계	급스	] H]	간	식비	목욕	-비]	비고										
450	30	00	1	100	50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개정 2013. 1. 25)

운동용품 지급 품목(제24조 관련)

(단위: 명, 벌, 켤레)

[별표 5] (개정 2013. 1. 25) (현행과 같음)

구분	인원	방한복	땀복	츄리 닝	<del>운동</del> 화	가방	유니폼	타이즈	하복	비고
요트	7	1	1	1	2	1	1	_	1	
육상	8	1	1	1	2	1	1	1	1	
롤러	9	1	1	1	2	1	1	1	1	
유도	8	1	1	1	2	1	2 (청·백 지급)	1	1	

[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표**(제31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6] (현행과 같음)

	구 분	금 (1위)	은 (2위)	동 (3위)	비고
	올림픽	10,000	7,000	5,000	
	아시안게임 계선수권대회	5,000	3,000	2,000	
단 체 전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	1,000	700	500	
전	· - - - - - - - - - - - - - - - - - - -	300	200	100	
전	!국규모대회	200	150	100	

※ 전국규모 대회는 메달수당을 인정하는 대회로 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7] <b>단원의 징계양정 기준</b> (제32조 관련)	[별표 7] (현행과 같음)			
구분	양 정 기 준				
견책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ul> <li>○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li> <li>○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ul>				
정직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임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	서식]					[별지 제1호 서	식]			
	재	직 중	- 명 /	너(제8조 =	관련)		(현행과 같음)				
Г.,	성 명		,	생년월일							
인적 사항											
	주 소										
	소 속										
재직	직 위										
사항				HE]							
	기 간			. 까지 (	년	월)					
용도											
위외	<b>나 같이</b> 지	직을 후	박인합니	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범기	제2호 /	 되지1					[별지 제2호 서	시1			
			· 명 /	<b>너</b> (제8조 =	관련)		[월시 세2호 시 (현행과 같음)	~i]			
		, -					(40.121)				
인적	성 명			생년월일			]				
사항	주 소	1									
-12-14	근무 부터	기간 까지		직위	근무부서						
경력 사항							_				
							-				
근무 연한	년	월		최종 리 • 직급							
퇴직			71	1 78							
사유		포상			 징계						
상벌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시행청					
사항											
용도											
	위와 길	  이 경력	을 증명	형합니다.							
		년	월	일							
		ىہ	٠	ול וו							
		٩	丁	시 장							

#### 햀 혀

[별지 제3호 서식]

### **근 로 계 약 서**(제4조 관련)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계약당사자

### 가. 사 용 자

1) 사업체 명칭 : 여 수 시 청 2) 사 업 자: 여수시장 3) 소 재 지 : 여수시 시청로 1

#### 나. 근 로 자

성 주 연	명			생년월	일		
주	소						
연 :	락 처	자	택		7	후대폰	

#### 2. 근로조건

가. 근무부서 : 여수시청 체육지원과 (직장운동경기부 틴)

나. 직 종 : 일용직(체육선수)

다. 보 수: 「여수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기준에 의함 마. 기타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및 「근로기준법」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 3. 근로계약기간 :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 을 보관한다.

> 년 월 일

사 용 자 : 여 수 시 장 (인)

근 로 자 : (인)

#### 개 젔 아

[별지 제3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제4조 관련)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여 수 시 청 (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하다) 과

**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 [는, 은]** 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sup>2)</sup>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 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 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 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 알까지는 중 구용되다 첫 제국기간 단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일까지를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근무지(근무장소):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 · 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기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경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출과하여 근로할 필요마, 있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다, 이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수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수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성인·동의를 드하여만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성인·동의를 드하여만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수인·동의를 다면 전상 아간이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의 따라 작업은 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점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제6조(유급후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자의 날
③ 관공자의 남
③ 관공자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

- 더. ·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 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
- , c ..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

를 지원한다.

의 적왕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전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 적왕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수 있다. (확인: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급, 그 외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선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부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업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회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대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
	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최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 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 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혐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 박 등 각종 비위 행위 4. 타 선수의 자유를 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제육회, 시도제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제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 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연봉  )으로 12월로 평균 분활하여 지급하고, 수당은 여수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배월20일에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초에 입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급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기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기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기 다른 지급액은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급)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 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별도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급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급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 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일무와 관련하여 이용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 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후기)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 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선 2부를 작성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ul> <li>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회통,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li> <li>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li> <li>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확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li> </ul>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어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찬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 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ol> <li>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li> <li>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li> </ol>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 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 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b>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사용자)</b> 주소 여수시 시청로 1
	회사명     여수시청       대표자     여수시장(인)
	선수(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 명     (인)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하 기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여수시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재)계약서(제4조 관련)	(현행과 같음)
직장 운동경기부 운동선수는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입	
단계약을 체결한다.	
I. 당사자 1. 사 용 자	
가. 사 용 자 : 여수시장	
나. 사 업 장 : 여수시	
다.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2. 선 수	
- 2. 년	
나. 생 년 월 일 :	
다. 주 소 : 파 레이고기	
Ⅱ. 계약 <b>조건</b> 1. 종 목:	
2. 보수등급:	
3. 기타 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조건, 수당 등은 「여수	
지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Ⅲ. 계약기간 : ~ (1년간)	
위와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하기로 서	
약하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 여수시장	
선 수:	
입 회 자 :	

	현			행 행					개	정	안	
[별지 제	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	]식]			
<b>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b> (제21조 관련)							(현행과 같음)					
		[	기도지	구 주	무	총감독	:					
ľ	팀】	,	재									
훈련일자	1	<b>_</b> 년 월	<u></u> 일	날씨								
훈련장소												
참여인원	참 여		명 불	참		ū	増0					
	불참사유											
2	· 훈	<b>련</b> 	내	<u>8</u>			$\dashv$					
시 간		전  내 용	시	오 간 훈		후  내 용						
			<u> </u>			0						
	특 	기	사	항			_					
[별지 제(	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		11 :	u 리스, A	กรกลาก
<u>〈신 설〉</u>	<u>&gt;</u>							여수시청 즉	けなせる	5/3/1	<b>ተ </b> ሄ숙소 ነ	실소신성서
								종목			직위	
								성명			성별	
								계약일			입소희망일	
								위 본인은 「이영 규정」의 내 있어 해당 내용 청합니다.	용을 =	숙지하	였고, 합숙	소를 이용함에
								2	20 t	₫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	하			

현 행		개 경	형 안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u>〈신 설〉</u>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퇴소신청서						
	종목		직위				
	성명		성별				
	퇴소희망일		퇴소사유				
	위 본인은 신청합니다.	개인 사정으	로 위와 같이	ㅣ 자진퇴소를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	귀하					